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SOGILAW Annual Report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8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LAW) is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and researchers working to advocate LGBTI people, to advance intellectual discussions on SOGI issues, and to bring changes to social and legal policies and systems so a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LGBTI people in South Korea. Founded in 2011, it has worked on numerous projects including lawsuits for the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survey studies on the lives and needs of LGBTI people and communities, and annual repor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people in South Korea.

Homepage

sogilaw.org

URL for Annual Reviews

annual.sogilaw.org

E-mail

sogilip.ks@gmail.com

Phone

+82 505 3000 0517

Facebook

www.facebook.com/sogilaw.org

SOGI법정책연구회 주요 활동

2011년 8월	창립 (회장: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1년 9월 30일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 (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2년 6월 1일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제작 도움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다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작)
2012년 10월 27일	“2012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2013년 3월 15일	<u>보도자료</u>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없이 성별정정 가능
2013년 7월 31일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주최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8월 9일	<u>논평</u>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2013년 9월 14일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11월 19일	<u>논평</u>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2014년 3월 10일	인권재단사람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인권중심사람 입주
2014년 9월 30일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주최 (기사:“정의가 행해지기 위해 또한 보여져야 한다”, 한겨레21, 제1033호, 2014.10)
2014년 12월 23일	<u>논평</u>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공동 발표)
2014년 9~12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주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
2015년 1월 6일	비릿 문타본과 성소수자운동 활동가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5년 2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주최 (진선미 의원실 등 공동주최)
2015년 3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현지 대응, 네트워크 활동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참여)
2015년 8월	제1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2015년 9월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은폐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에 진정
2015년 10월	국제LGBTI연합 가입, 아시아지부(ILGA-Asia) 컨퍼런스 참여 및 이사회 선출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5년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11월 27일	<u>대토론회</u>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공동주최
2016년 2월	창비학당 1기 '성 소수자, 한국 사회를 질문하다' 출강
2016년 3월	회장 이·취임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6년 5월 31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포용적 교육과 지속가능개발> 워크숍 참여 (정현희 연구원)

2016년 6월 22일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2016년 8월 20일	제2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2017년 2월 16일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2018년 2월 26일	보도자료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조사연구	2012년 6월~2014년 5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4년 6월~2014년 12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2017년 6월~2018년 1월 직장 내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구글, 인권재단 사람 발주 연구용역)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5.17-국문판, 2015.6.28-영문판) - 아름다운재단 지원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6.5.17-국문판, 2016.6.11-영문판) - 49통일평화재단 지원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2017. 5. 17-국문 온라인판, 2017. 7. 15-국문/영문 합본)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국문/영문 합본 2018.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국문/영문 합본 2019. 5. 17.)
SOGI인권아카데미	2016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1기(인권재단사람 지원) 2017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2기(인권도서관 冬花) 2018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3기
SOGI클리닉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2013.6.29.)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2013.8.20.)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4.26.) 4회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2014.5.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5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 의미와 과제 (2016. 11. 19.)
법적 소송/신청 대리, 자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 (서울서부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외 다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제LGBTI연합(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ILGA)

SOGI법정책연구회가 2013년부터 매년 펴낸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가 어느덧 여섯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제별로 작성하였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문판 뿐만 아니라 영문판도 함께 발행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매년 이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액후원자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고서 발간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부 필진으로 참여해 주신 김지림, 송지은 변호사,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기 쉽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신 이경민 디자이너, 충실하고 정확한 영문 번역을 맡아주신 김유석 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의미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SOGI법정책연구회 일동



목차

I. 2018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11
II. 2018년 한국 무지개 지수	15
III. 영역별 현황	23
1. 범죄화	25
2. 차별철폐와 평등	27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29
4. 교육/청소년	32
5. 군대	35
6. 구금/수용시설/난민	37
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38
8. 혐오표현	40
9. 괴롭힘/폭력/혐오범죄	42
10. 성별변경	44
11. 보건/의료	45
12. 여론/미디어	48
13. 인터섹스	52
14. 조사/연구	53
15. 국제인권매커니즘	55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57
부록	71
1. 2018년 주요 판례 및 인권기구 결정례 목록	72
2. 국내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	73
3.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후원자	78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은 별로 진척이 없었다.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기존 제1,2차에 있었던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관한 역할에서 여전히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부분에 최하등급인 ‘E’라고 평가 받기도 하였다.

반면,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퀴어문화축제의 방해, 정치권과의 결탁은 더 심각해졌다. 한겨레신문의 심층취재로 성소수자, 난민 등에 대한 ‘가짜뉴스’ 진원지가 ‘에스더기도운동’ 등 보수 개신교단체로 밝혀졌으며,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18년에 치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끊이지 않았고,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대로 폐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규범이 후퇴하였다.

하지만,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예년에 비하여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종교 사학이라도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강연 불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등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들에서 의미 있는 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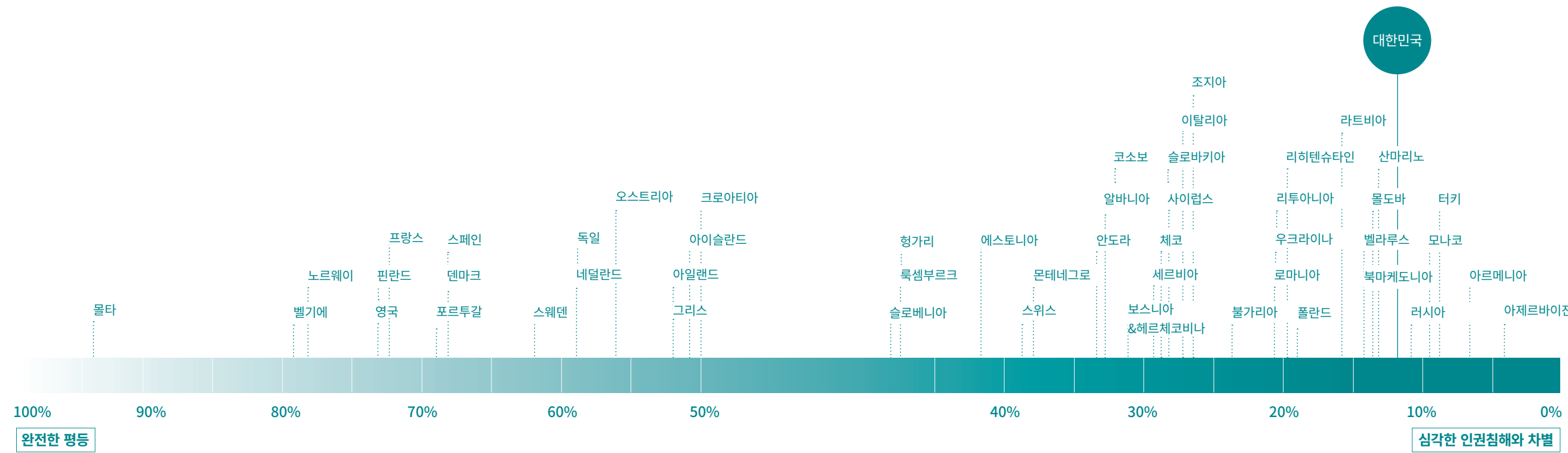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많지는 않았으나, 한 하급심 법원이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성소수자 여성 해군이 성폭력 혐오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에서,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 대한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만에 국제질병분류에서 ‘정신장애’의 분류에 있던 ‘성전환증/성주체 성장애’를 삭제하고, 성적 건강 관련 상태 범주 아래 ‘성별불일치’ 항목을 신설하여,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비병리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8」의 틀과「ILGA-Europe Rainbow Map」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¹

한국의 2018년 지수는 11.7%이다. 이는 2017년 11.85%보다 0.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개별 항목 상 변화는 없지만 평가항목의 가중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 순위 면에서는 2017년에는 44위를 기록한 산마리노(12.32%)보다 낮은 수치였는데, 2018년에도 44위를 기록한 산마리노(12.32%)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10.9%),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아제르바이잔(4.7%)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94.04%), 벨기에(78.76%), 노르웨이(77.74%), 영국(73.48%) 등이 꼽혔다.



● 전국적 적용 ◎ 일부 지역에만 적용

평등과 차별금지	헌법(성적지향)	
	고용(성적지향)	
	재화와 용역(성적지향)	
	교육(성적지향) ²	◎ 1.25
	보건/의료(성적지향)	
	평등기구(성적지향) ³	● 1.0
	평등정책기본계획(성적지향) ⁴	
	헌법(성별정체성)	
	고용(성별정체성)	
	재화와 용역(성별정체성)	
	교육(성별정체성) ⁵	◎ 1.25
	보건/의료(성별정체성)	
	평등기구(성별정체성)	
	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정체성) ⁶	
	법률(성별표현)	
	법률과 공공정책(인터섹스)	
가족	혼인평등	
	동반자관계 등록(결혼과 유사한 권리)	
	동반자관계 등록(제한된 권리)	
	동거	

가족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 없음 ⁷	● 2.0
	공동입양	
	동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입양	
	양친자격 당연인정	
	인공수정(커플)	
	인공수정(싱글)	
	성전환자의 이성혼 ⁸	● 1.0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적지향)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적지향)	
	혐오 규제 정책(성적지향)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혐오 규제 정책(성별정체성)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별정체성)	
	혐오 규제 정책(인터섹스)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과 신체적 온전성	법적 수단의 존재 ⁹	● 1.5
	행정적 절차의 존재	
	개명	● 0.9
	‘성주체성장애’ 진단/심리학적 소견 요건 없음 ¹⁰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 요건 없음 ¹¹	
	강제적인 외과적 개입 요건 없음 ¹²	

	강제적인 생식능력제거 요건 없음 ¹³	
	강제적인 이혼 요건 없음 ¹⁴	
	연령 제한 없음 ¹⁵	
	아동이 사전동의를 할 수 있기 전 의료적 개입의 금지(인터섹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공공행사 열림 ¹⁶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단체들이 운영됨 ¹⁷	
	전국적/지역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 2.8
난민	법률(성적지향)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적지향)	
	법률(성별정체성)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별정체성)	
	법률/정책/다른 인정 수단(인터섹스)	
계		11.7%

1	이 지도와 지수, 설명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rainbow-europe.org/about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는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한국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정책에 포함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등재할 것’,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정도이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은 명시되어 있으나, 성별정체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7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혼인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명시하는데, 한국 헌법상 이러한 혼인의 정의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8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한 다음에야 혼인을 할 수 있다.
9	성별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법원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10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함
11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12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함
13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함
14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19세 이상 행위능력자인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년일 것을 요구함
15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현재 혼인중인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혼인중이 아닐 것을 요구함
16	2018년 8월 인천 동구청은 9. 8. 개최예정인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을 불허하였다. 동구청이 든 불허 사유는 ‘보안요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으나 두 가지 사유 모두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2018년 9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10. 6. 개최 예정인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구남로 광장 도로점용허가를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하였다.
17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 등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인권이 아닌 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곳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7. 7. 27. 최종 승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미루다가 거의 1년 만인 2018. 6. 18.에서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하였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부산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과 축제를 후원하는 사업체에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 범죄화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형사9단독 양상운 판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부대 소속 장교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¹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서 "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는 이 같은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졌다면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정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유엔 권고 거부

정부는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결과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 3. 1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불수용한 이유로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²

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77개 한국비정부기구 모임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같은 불수용한 권고들 역시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금지조항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18. 11. 28.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금지 조항'에 대한 토론회³가 개최 되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활동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하여 전파매개금지 조항이 갖는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매개죄는 장기간의 약복용으로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인 경우에도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등⁴,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HIV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어 보건의료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다.⁵

토론회에서는 전파매개금지 조항이 의학적 연구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감염 예방 효과 없이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모습 ©희망을만드는법

HIV 감염인을 옥죄기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파매개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HIV/AIDS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010 판결
 2 「한국 정부, '사회적 합의' 이유로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 안 받아들여」, <여성신문>, 2018. 3. 19.자
 3 「콘돔 안 쓴 성행위 형사처벌... "혐오와 낙인 탓" [토론회] HIV 바이러스 미검출인데도 적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폐지해야」, <오마이뉴스>, 2018. 11. 28.자
 4 「전파위험 낮은 HIV 보건자, 감염 숨기고 성관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2018. 8. 18.자
 5 「HIV 혐오만 키우는 '콘돔 없는 성관계 처벌」, <한겨레21>, 2018. 12. 7.자

2 차별철폐와 평등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성소수자 인권 항목 삭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 2018년 8월 공표되었으나, 제1차, 2차 NAP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던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관한 항목이 통째로 삭제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¹

NAP는 그 동안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및 병력자(HIV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단별 인권 정책을 각각 독립적인 항목으로 수립해왔다. 그런데 제3차 NAP는 기존 제1, 2차 NAP에 명시되어 있던 인권정책 대상 집단 중 병력자 및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한 채로 수립되고 공표되었다. 성소수자 항목 삭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8년 초에 열린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에서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별로 없어서 항목으로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 대상 집단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제외하고 비가시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며,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² 제3차 NAP는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현황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성소수자 인권 보장이 사회적 찬반을 거쳐 결정되는 문제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3차 NAP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내용 중 성소수자 또는 HIV 감염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정책과제는 총 3개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조사하여 이를 등재하고,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를 구축하며,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에 (2017년 제작된 '성소수자의 이해 강좌'에 이어) '병력자(감염인)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좌를 추가 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규범의 후퇴

2018년 1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부터 충남지역의 보수개신교계는 위 조례 제8조 제1항³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한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제안설명서에는 “동성에 옹호와 남녀 구분이라는 인간 근본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에이즈라는 질병의 확대와 사회적 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등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내용을 담고 있다.⁵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인권시민단체들이 비판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가인권위원장이 강한 유감 성명을 발표하였으며⁶,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는⁷ 등 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에 따라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남도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2018년 9월 충남인권조례 제정안이 다시 통과되었으나, 새 조례안은 애초 폐지 운동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았던 조례 제8조 제1항을 삭제한 형태였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유사한 공격으로 인해 2018년 2월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에서, 2018년 5월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차별금지조항이 각각 삭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규범의 후퇴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어져

2018년에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내외 요구가 계속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⁹ 12월에는 국회의원실들과 공동주최로 한국 사회의 차별현실을 짚으며 그 대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안하는 토론회¹⁰를 각각 개최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였다.¹¹ 유엔의 인권기구들 역시 대한민국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복하여 촉구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



2018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모습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년 3월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및 성소수자 여성 등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다.¹²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12월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였다.¹³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3.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의지 피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7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와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팀’을 꾸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성차별시정팀을 통해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

2018년 9월에는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였다.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4가지 책무 중 첫번째 책무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 선언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꼽았다.²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다수 권고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한 종교사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학생자치단체의 강연회를 불허하고 관계 학생들을 징계 처분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³ 또한 같은 날 다른 종교사학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모임의 인권영 화제에 시설 대관을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6.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내린 데 이어,⁵ 2018. 9. 27. 대학병원에서 식판 색깔, 침상의 스티커 등으로 HIV 감염인인 입원환자를 구분하게 한 행위를 차별로 보아 행위 중지를 권고하였고,⁶ 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해 신장투석을 거부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장투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⁷ 또한 2018. 11. 21. HIV 감염인이 종합건강검진 전 감염사실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시술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소화기내과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교육 등을 권고하였다.⁸

국제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0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대한민국 17, 18, 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통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헌법상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이를 위한 구체적 입법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여하여 “한국

1 「문재인 정부의 성소수자 정책은 결국 ‘나중’?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성소수자 인권 항목 빠진 채 확정, <프레시안>, 2018.8.8.자
2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2018. 8. 8.자, 「[논평]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한다」
3 제8조 ①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4 자세한 사항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33쪽 참조
5 충청남도의회 김중필 의원, 2018. 1. 29. 자,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6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1. 31.자
7 「UN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남인권조례 폐지 중대한 우려”」, <한겨레>, 2018. 4. 9. 자
8 「지자체 조례서 사라지는 ‘성적지향 존중’ ... 인권단체 반발」, <연합뉴스>, 2018. 5. 2. 자
9 「시민사회계, 혐오를 뚫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다시 시동 걸다」, <참세상>, 2018. 8. 30.자
10 「혐오와 차별은 정치권의 침묵을 먹고 자랐다」, <한겨레>, 2018. 12. 4. 자
11 “‘이 세상에 차별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여성신문>, 2018. 10. 29.자
12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EDAW/C/KOR/CO/8)」, 2018. 3. 12. para 13
13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17차-19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ERD/C/KOR/CO/17-19)」, 2018. 12. 14. para 6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지방선거 혐오 대응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2018년 6월에 치른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 혐오 대응 네트워크’로 신고된 혐오표현 중 80% 이상(61건 중 49건)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통계 발표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인권위는 또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2018년 11월 성별,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⁰

3.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서울시 인권상황에 대해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 의식이 심화되고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사회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면서 총 37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은 위 37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써, 세부사업으로 별도의 담당부서가 있는 다른 소수자 집단(여성, 장애인, 노인 등)과 달리 시정 내에 성소수자 관련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의 내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0대 중점 과제 중에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가 포함되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세션 참가자들 ©SOGI법정책연구회

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등을 세부 사업으로 두었다.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는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인권 현안과 과제로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권존중을 받는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로 조사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논의가 많이 다루어졌다. '인식제고 - 차별/혐오 대응 사례' 세션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와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등이 한국 사례들로 소개되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 - 지자체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공유 및 정책방안 모색' 세션에서는 일본, 홍콩 등 외국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성소수자 인권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다.¹¹

1 「인권위, 인권보장체계 강화 위한 조직 개편 시행」,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7. 17.자
2 「제8대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사」,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9. 5.자
3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8진정0052400-18진정0065100-18진정0074000(병합) 결정
4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5진정0917300-16진정0398000(병합) 결정. 종교사학의 차별 관련 결정들의 자세한 내용은 4. 교육/청소년 참조.
5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자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자 16진정097590 결정
7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자 HIV 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에 대한 의견표명
8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1.자 18진정0160000결정.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관련 결정들의 자세한 내용은 14. 보건/의료 참조
9 「“한국사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11. 8.자;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12. 4.자
10 홍성수 연구책임,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자세한 내용은 8. 혐오표현 참조
11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소개는 <http://shrc.kr> 참조(2019.4.23. 최종방문)

4 교육/청소년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반성소수자 단체 반대로 공청회 파행

2018. 10. 18. 경상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보칙 등 4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의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등권에는 차별금지 조항(제16조)을 두어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¹

2018. 10. 21. 경남 양산 지역에서 반성소수자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3개 초등학교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성 전단지 배포하였다.² 2018. 11. 과 2018. 12. 에 걸친 두 차례의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제정 반대측의 항의와 몸싸움 등으로 파행되었고, 2018. 12. 6.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18. 12. 에는 경남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성소수자 학생이 박종훈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 그 편지내용이 신문 기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³

기독교계 사립 특수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 가정통신문 발송

2018. 7. 2.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기독교계 사립 특수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동성애자, 바람둥이, 변형적인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성병이 잘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통신문을 만든 보건교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의도가 전혀 아니라 오로지 쉽고 재미있게 성병에 대해 알리려고 하려던 것이었으며, 다른 학교의 보건교사가 적어놓은 글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였다.⁴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발간

2018. 7.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소속 교사들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뚱’이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를 발간했다.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고민과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성소수자 혐오에 교사로서 대처하는 방법,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⁵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표지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뚱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소수자 차별반대 의사 표명한 재학생들 징계

2018. 7. 26.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는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고, 채플이 끝난 뒤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한 재학생 5명에 대하여 정학, 근신, 사회봉사, 교수 면담,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는 학교 명예훼손, 지도교수 지도 위반, 수업 방해 등이었다.⁶ 이 사건 장신대 학생들은 같은 날 기념사진을 참여자 1인의 SNS에 게시하였는데, 해당 게시글이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에 알려지자 장신대에 대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장신대는 2018. 5. 19. ‘동성애에 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총회 및 학교 교칙 위반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8. 5. 31. 에는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징계 대상에 ‘대한예수장로회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추가 개정하였다.⁷ 이후 징계를 받은 재학생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⁸

2018. 7. 5.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홈페이지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을 올리며, (1) 교단 내 신학대학교 최초로 신입생 반동성애 입학 서약 실시(2018년도 신입생부터), (2) 총장 직속 동성애 대책자문위원회 조직 및 동성애 관련 교육지침 작성 및 교육, (3) 동성애 관련 학생, 교원, 직원, 정관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개정, (4) 학부 총학생회 및 신대원 학우회가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성명서 발표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고 공표하였다.⁹



장로회신학대학교 무지개 퍼포먼스 모습 © 서OO SNS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사학이라도 성소수자 주제로 한 강연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2018. 11. 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2017년 한 대학 내에서 학생자치단체가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개최하려고 한 강연회에 대해 학교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된 학생들을 징계 처분 한 것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처분의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¹⁰

같은 날, 인권위는 2015년 다른 한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 대표가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가 해당 영화의 상영이 학교의 설립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¹¹

- 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2018. 11. 9.자(2019.4.1. 최종방문)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469&menuCd=DOM_0000001660030000000&startPage=1&dataSid=986577
- 2 「"음란 세뇌 교육"...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 논란」, <오마이뉴스>, 2018. 10. 21.
- 3 「경남도교육감에게 보내는 성소수자 중학생의 편지」, <오마이뉴스>, 2018. 12. 10.
- 4 「"성병은 동성애자 좋아한다"니... '혐오'가르친 가정통신문」, <오마이뉴스>, 2018. 7. 9.
- 5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자원센터 명동>, 2018. 7.
- 6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학생들 징계」, <뉴스앤조이>, 2018. 7. 26.
- 7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장로회신학대학교>, 시행 2018. 5. 31. 일부개정
- 8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장신대 학생들, 징계 불복해 소송 제기」, <KBS NEWS>, 2018. 12. 4.
- 9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 7. 5.
- 10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8진정0052400-18진정0065100-18진정0074000(병합) 결정
- 11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5진정0917300-16진정0398000(병합) 결정

5 군대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형사9단독 양상운 판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부대 소속 장교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¹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서 "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는 이 같은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졌다면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군사법원, 해군 성소수자 성폭력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 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홍창식)는 부하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영관급 두 해군 장교에 대해, 피해자



해군 간부의 성소수자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모습 © 한국성폭력상담소

가 7년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²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과 직속 부하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³

여성·인권단체들은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을 촉구했다.⁴ 위 판결 이후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⁵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010 판결.
2 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판결
3 「'해군 성폭행' 항소심 무죄..."이라면 누가 성폭력 사건 고소하나」, <여성신문>, 2018. 11. 19.자
4 「해군 간부 2명이 성소수자 여군장교 성폭행... 고등군사법원,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법률방송뉴스>, 2018. 11. 26.자
5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간부 처벌해달라"...靑청원 20만 돌파」, <뉴스1>, 2018. 12. 2.자

6 구금/수용시설/난민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뒤엎고 우간다 출신 성소수자 여성에 난민인정 판결¹

2018. 10. 12.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난민지위를 부정한 우간다 여성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7. 12. 22.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20대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하였다.² 그러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그녀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우간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박해사실이 인정되고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그녀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³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가짜뉴스’ 진원지, 기독교 단체 ‘에스더기도운동’으로 밝혀져

2018년 약 500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자, 한 기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생산한 ‘가짜뉴스’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난민에 대한 범국가적이고 광범위한 공포와 혐오가 확산되었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개와 카카오톡 채팅방 50여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짜뉴스들의 발원지는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종교단체의 누리집 게시판(공지사항)으로 밝혀졌다.⁴ ‘가짜뉴스’의 주 내용은 ‘차별금지법은 교회탄압법이다’,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무슬림 늘어나면 강간을 높아진다’ 등의 내용이었다. 또 다른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자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에 반대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⁵

1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36쪽 참조
3 「대법 뒤엎고 '동성애 박해' 난민 인정 판결」, <경향신문>, 2018. 10. 18. 자
4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신문>, 2018. 9. 27. 자
5 「충남 기독교 단체 "인권조례제정하면 '동성애자 난민' 몰려와」, <오마이뉴스>, 2019. 9. 12. 자

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인천퀴어문화축제,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부상자 속출

2018년 9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축제가 예정 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불법촬영, 폭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¹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²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0. 3.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규탄 집회’를 열었다.³ 또한 2018. 10. 10. 당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축제 예정 장소에서 전날 밤부터 밤샘 기도회를 열어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당일 축제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축제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반대집회 참가자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축제 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통행을 막았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전주,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퀴어문화축제 개최 도시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광주 등으로 늘었다.



9월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 © 경인일보

장로회신학대학교, ‘무지개 퍼포먼스’를 이유로 신학대학원생들 징계

2018년 7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당시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2018.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한다는 뜻에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유기정학 6개월 등 징계처분을 하였다.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을 대리하여 2018. 12. 4.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⁶

1 「“집단적 린치””일방적 테러” 인천퀴어축제에서 무슨 일이?», <한겨레>, 2018. 9. 11.자
2 「인천 첫 ‘퀴어축제’ 몸싸움으로 결국 무산… 경, ‘동성애 반대 시위’ 8명 입건」, <조선일보>, 2018. 9. 9.자
3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 “우리는 여전히 여기있다”」, <인천투데이>, 2018. 10. 4.자
4 「인천퀴어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뉴스앤조이>, 2018.10.11.자
5 「‘무지개 깃발’ 들었다고 징계? “시대는 변했다”」, <오마이뉴스>, 2018. 12. 18.자
6 「“무지개 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생들 소송」, <한겨레>, 2018. 12. 4.자

8 혐오표현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되었다가 철회

2018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곧 철회되었다. 2018. 2. 13.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성별·장애·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폭력·증오 선동·고취 행위, 공개적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확산방지 관련 기본계획,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는 한편, 법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 28.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철회되었다.¹ 또한 2018. 9. 18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11일 철회되었다. 양 법안 모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혐오발언 정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운동기간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다. 제보된 총 61건 중 49건인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김문수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유해하다.", "동성애가 인정될 경우에 과연 에이즈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등 혐오발언을 했다.² 선거결과, 김문수 후보는 낙선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 ©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정치인, 공중파 방송 등에서 공개적인 성소수자 혐오표현 지속

공중파 방송, 반동성애단체의 국회 내 기자회견 등 공적 영역에서 혐오표현도 지속되고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찬반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반대 패널로 나온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영길 변호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의 혐오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³

또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제공한 국회 내 기자회견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주최로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⁴ 이와 상관없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그대로 임명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초중고, 대학,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의 영역별 해외사례, 운영자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의 목적, 법적 근거, 적용범위, 개념과 판단기준,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예방,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검토를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자율적인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개념에는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

1 「갈수록 극악해지는 혐오댓글, ‘혐오표현 규제법안’ 목소리 커져」, <레디앙>, 2018. 7. 25.자
2 「세월호 유가족·성소수자 향한 김문수 발언, 인권위 진정」, <오마이뉴스>, 2018. 6. 19.자
3 「언론연대, KBS ‘심야토론’ 동성애 혐오 공개질의」, <미디어오늘>, 2018. 11. 9.자 등. 자세한 내용은 15. 여론/미디어 참조
4 「국회에서 쏟아진 혐오 표현들...이를 지원한 한국당」, <오마이뉴스>, 2018. 9. 11.자
5 홍성수 연구책임,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괴롭힘/폭력/혐오범죄

성소수자 여성 해군, 상관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 당해,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 선고

2018. 4. 18. 및 5. 15.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속 부하인 성소수자 여성 해군 대위에게 상습적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해군 소령 2명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인정하여 각 10년과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¹ 그러나 2018. 11. 항소심인 해군본부 고등군사법원 특별부(재판장 홍창식)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²

피해자는 2010년 해군 함정에서 복무하던 중, 상관들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약점으로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괴로워하다 2016년 자살시도에 이르렀고, 이후 군 수사관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거나,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³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이) 저항하기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들었다.⁴ 위 무죄판결 이후, 2018. 11. 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고 총 206,447명(2018. 12. 9. 기준)이 청원에 참여하였다.⁵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성소수자, 군인권단체 등은 성명을 내어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적체성을 문제 삼아 이성애자로 ‘교정’하겠다는 빌미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의 유형이며,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⁶ 2018. 11. 14. 및 11. 22.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부상자 속출

2018년 9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불법촬영, 폭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⁷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⁸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0. 3.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규탄 집회’를 열었다.⁹ 또한 2018. 10. 10. 당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¹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축제 예정 장소에서 전날 밤부터 밤샘 기도회를 열어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당일 축제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축제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반대집회 참가자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축제 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통행을 막았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팀(팀장 김승섭 교수)이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305명) 거의 모두가 축제의 현장에서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팀은 응답자의 70%(215명)가 축제 참가 이후 우울증상을 보이고, 54%(257명)는 급성스트레스장애로, 66%(202명)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측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축제 참가자가 경험한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1 「기자회견문 -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18. 11. 26.자

2 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판결

3 「군 첫 미투 폭로... ‘성폭행 피해’ 여장교 인터뷰」, <시사저널>, 2018. 3. 26.자

4 「성명 - 이것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자, 성소수자 혐오범죄다」, 한국여성민우회, 2018. 11. 21.자

5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2018. 11. 9.자 (2019. 4. 1. 최종방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navigation=petitions>

6 「성명 - 이것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자, 성소수자 혐오범죄다」, 한국여성민우회, 2018. 11. 21.자

7 「"집단적 린치" "일방적 테러" 인천퀴어축제에서 무슨 일이?」, <한겨레>, 2018. 9. 11.자

8 「인천 첫 '퀴어축제' 몸싸움으로 결국 무산... 경, '동성애 반대 시위' 8명 입건」, <조선일보>, 2018. 9. 9.자

9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 “우리는 여전히 여기있다”」, <인천투데이>, 2018. 10. 4.자

10 「인천퀴어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뉴스앤조이>, 2018.10.11.자

10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발표

2018. 6. 19.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가 발표되었다.¹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서울지방법원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제2차 공익·인권 분야 연구>로 선정되어 실시한 이 조사는,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²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성별정정절차에 대한 조사이다.³

대법원은 2006. 6.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9.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위 예규에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성별정정절차가 개별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⁴ 2013. 1. 부터 2018. 1. 까지 성별정정을 경험했거나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성별정정절차 진행 및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물은 이 조사에서도,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별정정 신청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41.4%가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고, 37.1%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특히 제출 서류의 어려움 중에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커서,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7%가 ‘부모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답했다. 신청 후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응답자의 30.2%가 서류에 대한 보정권고/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필수적 첨부서류 외에도 현재나 과거 사진,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정체성을 의심하는 등 불쾌하거나 모욕적 질문을 받은 경우도 보고되었다. 심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정정절차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자기결정권과 신체온전성이 보장되는 신속, 명료, 접근 가능한 절차’로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반영한 구체적 지침 마련,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기간 단축 및 안내, 성별정정 사건에 대한 통계 작성, 법관 및 법원 공무원 교육 등을 제언하였다.

1 류민희 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서울지방법원호사회 제2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2018. 6. 22.자

2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3 「단독」“성인인데 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한국 첫 성별정정절차 보고서, <경향신문>, 2018. 6. 19.자

4 「법원, 성전환 신청자에 ‘성기 사진’ 요구」, <한국방송>, 2013. 10. 13.자

11 보건/의료

서울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2018. 3. 28.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3개 서울시립병원에 배포한 사실이 알려졌다.¹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5년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일어난 HIV 감염인에게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 행위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² 2016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위 사건을 HIV 감염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였는데, 서울시가 이를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시립병원들이 ‘표준주의 지침’을 지킬 것,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³

복지부·질병관리본부,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2018. 8. 31.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인권위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⁴

국가인권위는 2017. 12. 6.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권고⁵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 법령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에서 HIV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 못하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가이드 제작, 배포 및 교육콘텐츠 개발, 홍보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관한 3건의 결정

2018년에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에 관하여 3건의 국가인권위 결정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⁶은 대학병원에서 HIV 감염인인 입원환자에게 다른 색깔의 식판을 지급하고 침상에 혈액조심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등 HIV 감염인을 별도로 구별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HIV 감염과 관련해서는 ‘표준주의’를 준수하면 충분함에도, HIV 감염인에게 별도의 표식을 하고 이를 혈액관련 시술과 상관없는 의료관계자나 다른 환자들에게도 인식하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에게 HIV 감염인을 구별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 사건⁷⁸은 2001년 HIV 확진을 받고 병원 감염 내과에서 정기적 검사를 받아 온 진정인이 2015년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해당 병원에서 투석을 거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병원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병원의 신장 투석 거부가 HIV 감염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회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장 투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내렸다.



2016년 HIV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 인권위 진정 당시 모습 © 한국HIV/AIDS감염인협회 KNP+

세 번째 사건⁹은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HIV 감염인에게, 보호장구가 없고 시술준비가 불가능하다며 병원이 센터가 아닌 소화기내과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이미 감염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병원이 그에 대한 방안 모색 없이 다른 진료과의 검진을 요구한 것은 차별행위라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병원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직원교육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트랜스젠더·인터섹스의 의료접근권 관련 권고 내려

2018. 3. 1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권고문¹⁰을 발표했다. 2018. 2. 22. 이루어진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당 권고문에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의료접근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접근에 제약이 있고, 인터섹스의 경우 동의 없이 ‘생식기 정상화 수술’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인터섹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가 차별 없이 의료접근권을 보장받고 원치 않는 수술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상 확립된 원칙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역시 2017. 9. 한국정부에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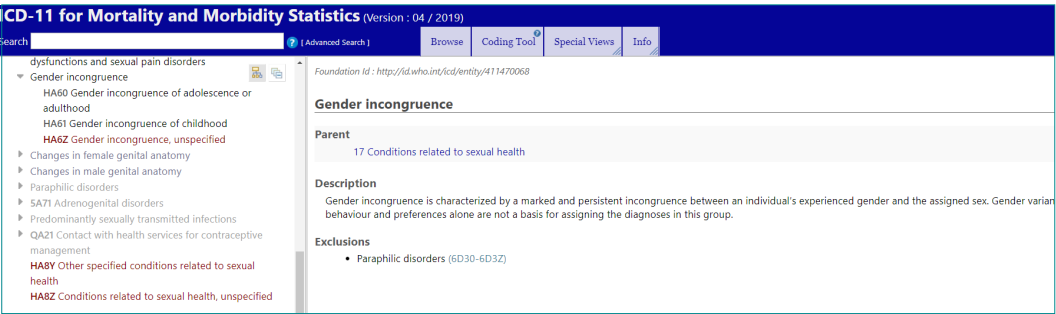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서 ‘성전환증/성주체성장애’ 삭제

2018. 6. 18.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의 온라인버전¹²을 공개했다. ICD-10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에서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 국제질병분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전환증/성주체성장애’라는 정신장애의 하나로 분류했는데, 이는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으로 보는 것으로써 낙인,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ICD-11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성적 건강 관련 상태

범주 아래 ‘성별불일치’ 항목을 신설하였다.¹³

세계보건기구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한국의 경우 국제질병분류를 상당수 준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운영하고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진단명과 진단기준의 변화가 예상된다.¹⁴ 또한 대법원예규,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등 성주체성장애를 명시한 법령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¹⁵

무엇보다 현재의 의료적 기준에 맞춘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점을 당사자의 인권에 기반한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논평¹⁶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보다 근본적인 사회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국제질병사인분류 제11판 등재된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 세계보건기구

1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이 13개 서울 시립병원에 배포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8. 4. 18.
2 자세한 배경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4쪽 참조
3 「[논평] HIV감염인의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 -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시립병원에서 모든 병원으로!»,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18. 4. 18.
4 「“AIDS 환자에 의료차별행위 개선 권고”...복지부 수용», <KBS>, 2018. 8. 31.
5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자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자 16진정097590 결정
7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자 HIV 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에 대한 의견표명
8 보다 자세한 배경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56쪽 참조
9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1.자 18진정0160000결정
10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DAW/C/KOR/CO/8)」, 2018. 3. 22.자
11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56-57쪽
12 <https://icd.who.int>
13 「30년 만에...WHO “트랜스젠더, 정신질환 아니다”», <여성신문>, 2018. 6. 20.자
14 「트랜스젠더」 질병서 제외, 정책 변화 불가피, <국민일보>, 2018. 7. 8.자
15 「국방부령 "성주체성장애 보이는 사람은 칸막이하고 검사"... 성주체성장애는 어떤 장애?», <법률방송뉴스>, 2019. 1. 15.자
16 「[논평]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비병리화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 역사적 결정에 발맞춘 한국정부의 변화를 요구한다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8. 6. 19.자

12 여론/미디어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의 49.0%가 동성애자 포용 거부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9~69세 성인의 49.0%가 동성애자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전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 등 여섯 유형의 소수자 집단 가운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은 전과자(62.7%)에 이어 가장 높았다. 다만,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8년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2013년에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62.1%로 집계되었고,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57%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8년 조사에서 49.0%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동성애 반대’ 여론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점이 부각되었다.²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여성이 57.1%에서 49.5%로, 남성이 57.2%에서 48.4%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에서 약 10%포인트 하락하였고, 30세 미만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44.8% → 41.5%).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57.1% → 43.7%).³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으로 ‘이달의 PD상’ 수상했으나 프로그램은 조기 종영

EBS <까칠남녀>는 2017. 12. 25. 과 2018. 1. 1. 2회에 걸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출연자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집편을 방송하였다. 방송 이후 반성소수자 단체들은 공영방송에서의 동성애 옹호, 특정 출연자의 SNS 내용을 이유로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항의와 시위를 벌였다. EBS는 <까칠남녀>가 2018. 2. 19.자로 종영 예정임을 발표했고 이어 반성소수자 단체에서 문제를 삼은 출연자인 은하선 작가에게 출연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들이 EBS의 조치에 항의하며 추가적인 방송 녹화를 보이콧함에 따라 <까칠남녀>는 2018. 2. 5. 방송을 마지막으로 조기 종영하였다.⁴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편은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어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가진 출연자들과 성소수자 관련 용어에서부터 일상에서의 혐오와 제도적 차별의 문제를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⁵ 방송에 출연했던 박한희 변호사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즐거워하고 공감하며 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까칠남녀>가 화제가 되고 의미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일상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전형적 모습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⁶ 이 방송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진정한 성평등 사회 건설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였다.⁷

<까칠남녀> 성소수자편 방송 이후 반성소수자 단체는 EBS 로비를 점거하고 규탄 시위를 하는 등 조직적인 항의를 지속했다.⁸ EBS는 고정 출연자이자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에게 하차를 통보하고 <까칠남녀>의 종영을 공식화하였다. EBS는 이 결정들이 법률적인 검토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 사건과 무관

하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반성소수자 단체의 시위에 굴복한 결정으로 E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⁹ 방송법 제6조 제5항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5. 1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¹⁰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 © 희망을만드는법

KBS, 성평등센터 방송사 중 최초로 신설

2018. 11. 13. KBS가 방송사 중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하였다.¹¹ 센터는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문제의 예방과 처리,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게 된다.

KBS 성평등센터 신설은 2018. 7. 18.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성평등센터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 개편안이 상정되자, 조우석 이사¹²는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수간과 소아성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수간이나 소아성애를 어떻게 동성애와 병렬해 놓고 비하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조용환 이사)’는 비판을 받았다.¹³ 조우석 이사를 포함한 4명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인원 6명의 만장일치로 개편안이 의결되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여과 없이 송출

KBS는 2018. 10. 27. 방송된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고 ‘기독교의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신념을 가진 출연자들을 섭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거짓 정보를 전국으로 송출하였다.¹⁴

이 토론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찬성과 반대가 경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제하여,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

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동수로 하였다.¹⁵ 토론의 과정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동성애 포르노를 보고 동성애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많다”는 패널의 발언, “동성애는 질병이다”이라는 시청자의 문자 등 혐오성 발언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는 허위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나 정정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8. 12. 5.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발송하여 방송기획의 문제, 패널구성 문제, 허위정보의 전파, 시청자 의견 노출에서의 문제점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지적하고 제작진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¹⁶ 2018. 12. 19. 면담에서 제작진은 지적인 의견에 공감하며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KBS의 역할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변하였다.¹⁷



KBS 엄경철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방송장면 © KBS영상 캡처

한겨레, 탐사보도 통해 동성애·난민 혐오 선동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극우 개신교 세력 지목

한겨레는 2018. 9. 27.부터 4회에 걸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한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¹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채팅방을 전수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2개월 이상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체를 추적한 결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극우와 개신교가 만나는 ‘에스더기도운동(이하 에스더)’을 지목하였다.

이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가짜뉴스의 단골주제는 동성애 혐오였다. 미국의 목사부부가 동성커플의 주례를 거부해서 징역과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는 미국 현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에

스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개신교 계열의 중앙일간지인 <국민일보> 전면 광고로, 개신교 유튜브 채널 KHTV의 강연 영상으로 유통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악용되었다.

이 보도 이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¹⁹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겨레의 보도가 ‘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공론장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여 2018년 9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하였다.²⁰ 한국신문협회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추적하는 취재과정과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여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탐사기획을 2019년 한국신문상 ‘기획·탐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²¹

1 2018. 9. 1. ~ 10. 31. 기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12월. 다운로드링크: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SubjectView.do?gubun=RE&seqNo=BASE_000000000000488#

2 「동성애 반대」 여론, 49%로 첫 절반 이하...이념은 '진보' 늘어, <연합뉴스>, 2019. 2. 17.자

3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312쪽,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58쪽,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12월.

4 「은하선 하차 논란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이르기까지」, <경향신문>, 2018. 2. 7.자

5 「"불가능에 가깝다"던 성소수자편, <까칠남녀>가 해냈다」, <오마이뉴스>, 2018. 1. 3.자;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한겨레21>, 제1196호, 2018. 1. 16.자

6 「역사적 사건' 된 <까칠남녀> 특집, 왜 출연했냐 묻는다면」, <오마이뉴스>, 2018. 1. 8.자

7 「판결의 온도' <까칠남녀> 등 6편, 이달의PD상 수상」, <PD저널>, 2018. 4. 17.자

8 「<까칠남녀> 성소수자편 후폭풍...학부모들 EBS로비 접거」, <연합뉴스>, 2018. 1. 5.자

9 「논평-EBS의 <까칠남녀> 불명에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 공지, 2018. 2. 6.자 (2019. 3. 29. 최종방문)

10 「활동-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홈페이지 공지, 2018. 5. 17.자 (2019. 3. 29. 최종방문)

11 「KBS 성평등센터 개소 "차별과 배제 없는 KBS 만들 것"」, <노컷뉴스>, 2018. 11. 13.자

12 조우석 이사는 2015년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를 “더러운 좌파”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11. 혐오표현' 참고

13 「KBS 방송사 최초 상설 성평등센터 신설」, <미디어오늘>, 2018. 7. 18.자

14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KBS NEWS>, 2018. 10. 28.자, 모두발언 전문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1078>

15 「공영방송 토론의 혐오발언 '스피커' 딜레마」, <미디어오늘>, 2018. 10. 31.자

16 「의견서 및 면담요청서-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공지, 2018. 12. 31.자 (2019. 3. 29. 최종방문)

17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 면담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공지, 2018. 12. 31.자 (2019. 3. 29. 최종방문)

18 「「학교서 항문성교 수업」... 에스더의 인권조례 반대 가짜뉴스」, <한겨레>, 2018. 9. 27.자. 전체 기획기사는 다음 링크 참고: <http://www.hani.co.kr/arti/SERIES/1147/>

19 「이효성 “현행법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단속하겠다”」, <한겨레>, 2018. 10. 11.자

20 「모니터-이달의 좋은 보도상,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파헤친 한겨레」,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공지, 2018. 10. 18.자 (2019. 3. 29. 최종방문)

21 「「한겨레」 가짜뉴스 보도 한국신문상」, <한겨레>, 2019. 3. 12.자

13 인터섹스

인터섹스 기사화와 성소수자인권포럼 세션 등장

2018년 일다, 오마이뉴스, 동아사이언스 등 언론에서 인터섹스를 다루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¹, 여성과 남성 이외의 성별표기를 허용하는 해외국가 소식, 인터섹스의 스포츠 경기 참가에 대한 논의 등을 소개하는 외신도 보도되었다.² 한편, 10회를 맞이한 성소수자인권포럼에서는 인터섹스 세션이 처음으로 열렸다.³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트랜스젠더·인터섹스의 의료접근권 관련 권고 내려

2018. 3. 1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권고문⁴을 발표했다. 2018. 2. 22. 이루어진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당 권고문에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의료접근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접근에 제약이 있고, 인터섹스의 경우 동의 없이 ‘생식기 정상화 수술’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비차별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인터섹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1 「‘한겨레’ 가짜뉴스 보도 한국신문상」, <한겨레>, 2019. 3. 12.자

2 「네덜란드에서 젠더 중립 여권 발급... 성별 'X'로 표기」, <YTN>, 2018. 10. 23.자, 「'5~10년 뒤 육상' 인터섹스 종목 생길 것...공정한 경쟁 필요」, <뉴스1>, 2018. 4. 27.자

3 「제10회 성소수자인권포럼」, 성소수자인권포럼 홈페이지 공지, 2018. 2. 3.자 (2019. 4. 23. 최종방문)

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DAW/C/KOR/CO/8)」, 2018. 3. 22.자

14 조사/연구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0%가 폭력 피해로 우울증상 겪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팀(팀장 김승섭 교수)은 2018. 9. 8.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2018. 10. 10.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¹

연구팀은 2018. 9. 15.~17.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자의 경험을 조사하였다.² 응답자는 모두 305명이었으며, 이 중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254명(83%)이었다. 응답자들 거의 모두가 축제의 현장에서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나, 욕설/조롱/비하를 들었다는 응답자는 각각 98%, 86%에 달했고, 밀침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79%, 신체적 폭력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73%로 나타났다. 실제로 반성소수자 세력이 자신을 꼬집거나 때렸다는 응답은 32%, 물건을 훼손/파손당한 경우가 32%,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27%였다. 성적으로 희롱/모욕/위협을 당했다는 응답은 52%였는데, 응답자 가운데 15%(46명)은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우울척도(CES-D) 문항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0%(215명)가 축제 참가 이후 우울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일반 인구의 7.2%(한국복지패널조사, 2017)가 우울증상 유병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또한 급성스트레스장애척도(ASDS) 문항을 분석 결과 54%(257명)는 급성스트레스장애로, 특히 66%(202명)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측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축제 참가 이후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혹은 정신과 이외의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축제 참가자가 경험한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초중고, 대학,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의 영역별 해외사례, 운영자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의 목적, 법적 근거, 적용범위, 개념과 판단기준,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예방,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검토를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자율적인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개념에는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 발표

2018. 6. 19.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가 발표되었다.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서울지방법원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제2차 공익·인권 분야 연구>로 선정되어 실시한 이 조사는,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⁵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성별정정절차에 대한 조사이다.⁶

대법원은 2006. 6.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9.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위 예규에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성별정정절차가 개별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⁷ 2013. 1. 부터 2018. 1. 까지 성별정정을 경험했거나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성별정정절차 진행 및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물은 이 조사에서도,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별정정 신청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41.4%가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고, 37.1%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특히 제출 서류의 어려움 중에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서,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7%가 ‘부모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답했다. 신청 후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응답자의 30.2%가 서류에 대한 보정권고/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필수적 첨부서류 외에도 현재나 과거 사진,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정체성을 의심하는 등 불쾌하거나 모욕적 질문을 받은 경우도 보고되었다. 심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15 국제인권매커니즘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성소수자 정책에 최하등급’

2018. 11. 8.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4차 심의 후속보고서 중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부분에 대해 최하등급인 ‘E’라고 평가하였다.¹ 지난 2015년 11월 진행된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후속보고서에서, 자유권위원회는 ① 균형법 92조의 6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해당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입장, ② 중등 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성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내용을 배제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결정, ③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성별에 관한 개념이 바뀌는 경우이나 성별 정정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 ④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혐오, 폭력에 대한 불용인과 성소수자 보호 법제 및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관용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에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나 이행 조치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반대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되었다는 의미의 최하등급 ‘E’를 부여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18. 3. 9.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8차 심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 여성,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노인 등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²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접근에 제약이 있고, 인터섹스의 경우 동의 없이 ‘생식기 정상화 수술’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인터섹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1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뉴스앤조아>, 2018. 10. 11.자
2 조사결과는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첨부 문서-2018090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3 홍성수 연구책임,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4 류민희 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2018. 6. 22.자
5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6 「[단독]“성인인데 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한국 첫 성별정정절차 보고서」, <경향신문>, 2018. 6. 19.자
7 「법원, 성전환 신청자에 ‘성기 사진’ 요구」, <한국방송>, 2013. 10. 13.자

1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서’(CCPR/C/124/2)
2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EDAW/C/KOR/CO/8)」

Chapter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 2019년 4월 현재, 시행일 기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군대	군형법	➡ 1962년 제정	과거에는 제15장(기타의 죄)에 제92조 (추행)로 “계간 ¹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음으로써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까지 처벌함.
		➡ 2009년 제92조를 제92조의5로 변경하면서 법정형을 징역1년에서 징역2년으로 상향조정. 2010. 2. 3.부터 시행	2009년 개정법은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의5(추행)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
		➡ 2013년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면서 군형법상 성폭력 규정 역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대체(국방부 의견 반영).	2013년 개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² 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³ 2017년 위헌법률심판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2018년 5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 2001년 제정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제2조 3호),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30조 조사대상 조항에서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1항)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제 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권리구제로는 소장 면담과 청원 등을 규정(제116조 및 제117조)
수용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07년 형행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신설 ➡ 2008년부터 시행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수용시설 / 군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09년 군행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신설 ➡ 2010년 5월부터 시행	조항만 약간 다를 뿐 위와 동일하게 규정(제6조, 제101조, 제102조)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출입국	외국인보호 규칙 (법무부령)	➡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인의 처우에 관한 규칙 ➡ 2015년 6월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소 내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 신설	제6조 제4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입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와 소지품 검사에 있어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보호 외국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방 구분으로 “환자, 임산부,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의 예외로 규정
군대	병역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⁴ 에 따라 2008년 단서조항 삽입	병역판정 신체검사서에서 비뇨기와 검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나,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검사를 대체(제8조 제2항 10호 단서)
군대	병역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1978. 12. 7.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을 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도입 ➡ 1999. 1.30,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 규정이 사라지고 현재의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라는 용어 등장. 이후 유지. ➡ 2015.10.19, 일부개정 당시 ‘성주체성 장애’ 정도 판단에 있어 전반적 기능 평가척도(GAF)를 기준으로 추가 ➡ 2018.2.1, 일부개정으로 ‘성주체성 장애’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GAF기준을 삭제했으며, 문구를 수정함 ➡ 2018.9.17. 성주체성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3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경도, 고도의 2단계로만 나눔	102의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도인 경우 4급, 고도인 경우 5급 판정이 내려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행정규칙 및 대법원예규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성별정정제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 2006년 대법원 결정 ⁵ 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7년 제정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⁶ 를 일부 수용하여 2009년 개정 ➡ 2011년 대법원 결정 ⁷ 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 ➡ 2013년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하면서, 성별정정허가신청 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성별정정 허가신청과 허가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목록과 조사사항을 규정 “제3조(첨부서류) ①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 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i)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ii)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6. 부모의 동의서 제6조(조사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 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 인지, 현재 혼인 중인지 ,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 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 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 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 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 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 2007년 해양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 2018년 해양경찰청이 다시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 훈령으로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과 더불어 ‘성적 소수자’라는 말이 들어간 행정규칙. 2018. 5. 14. 경찰청훈령이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바뀌며 성적 소수자가 삭제되었으나, 해양경찰청 훈령은 그대로 유지 제2조 4호에 ‘성적 소수자’ 정의규정 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라고 규정 제4장(수사) 제3절(사회적 약자 보호)의 제56조(성적 소수자 수사)에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우팅 제한 제4장(수사) 제4절(유치인 인권보장)의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항에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 2006년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 2007년 시행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해양경찰청훈령)	➡ 2011. 9. 시행 ➡ 해양경찰청훈령이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 2018년 해양경찰청이 다시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 훈령으로 개정	위와 동일하게 규정 과거에는 위 성적 소수자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경찰청훈령과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됨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군대 / 수용시설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 2011. 2. 제정	제5조(차별금지) 징계입창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나이·종교·학력·출신지역·용모·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 2006년 2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⁸ 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2006년 4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제정 ➡ 위 <지침>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8년 국방부 훈령 제898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일부 수정, 격상 ➡ 2009년 <부대관리훈령>이 제정되면서 내용변경 없이 통합	제4편(사고예방)의 제7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으로 실려 있음 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 제한, 교육 강화, 동성애자 병사의 모든 성적 행위 불인정 등을 규정
군대	군 인권업무 훈령	➡ 2011. 7. 제정 ➡ 2017. 1.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추가	제16조 (교육내용) ① 병 및 간부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6.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군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 2004. 10. 제정 ➡ 2018. 6.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추가	제5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계급, 직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	헌혈기록카드 (보건복지부 고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내에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¹⁹ 에 따라 2005년 ‘동성과의 성접촉’ 항목을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 항목으로 변경 ➡ 2009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고시로 변경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성간의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어서 다르게 설정 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에서는, “성접촉이란 함은 깊은 키스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례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미디어	기초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 2017. 11. 제정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야 한다.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한 경우				
미디어	기초	강릉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8. 12. 제정	위 거제시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
미디어	기초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2018. 11. 제정	위 거제시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
교육	광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2010. 10.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	광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1. 10. 제정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	광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 2012. 1. 제정 ➡ 2017년 9월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 ➡ 2019. 3. 성소수자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신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 일하는 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최초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등장함
				차별금지사유로서의 명시를 넘어 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 권리 등을 명시
일반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2012. 9.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	광역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2012. 10. 제정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교육	광역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2013. 6. 제정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¹⁰ 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	기초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4. 제정	제6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조례	➡ 2011. 5.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7.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1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1. 1. 제정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3. 4.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일반	광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10. 제정	제2조(기본이념)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 201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4.3. 도의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결의함 ➡ 2018.10.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가 다시 제정됨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충청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 10. 제정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7. 12.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군민은 인권을 존중 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는 군수에게 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1 남성간 항문성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 2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사관후보생 등)
- 3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참조
- 4 국가인권위원회 2007. 7. 20.자 07진인533 결정 참조. 이 결정은 법원 결정에 의해 남성으로 성별정정한 트랜스젠더가 징병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결정문 및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징병전담의사가 하체를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시진(視診)한 사건에 대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 5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6 국가인권위원회 2008. 8. 25.자 06진차525☒06진차573병합 결정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성별정정 허가요건 중 성기수술, 만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등 9가지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하였다.
- 7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8 당시 부대는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동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찍어올 것을 요구하였고 HIV/AIDS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한 강제채혈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 26.자 06진차87 전원위원회 결정)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와 내용은, 정율,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물꼬를 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듬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8, 8-12쪽을 참조
- 9 국가인권위원회 2004. 8. 3.자 03진차66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헌혈 전 작성해야 하는 헌혈기록카드의 문진사항 중 채혈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최근 1년 사이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항목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차별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 이후 ‘여성 간의 성관계’만을 제외하였고,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여전히 헌혈금지사유로 하고 있다.
- 10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부록 1. 2018년 주요 법원 판례 및 인권기구 결정례 목록

1. 법원 판례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군형법』제92조의6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010 판결

군사법원, 해군 성소수자 성폭력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

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2심)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판결(2심)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뒤엎고 우간다출신 성소수자 난민신청자에 난민인정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국가인권위, “종교 사학이라도 성소수자, 페미니즘 주제로 한 강연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8진정0052400·18진정0065100·18진정0074000(병합) 결정

국가인권위,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의 영화제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5진정0917300·16진정0398000(병합) 결정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자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 HIV 감염인을 다른 입원환자와 구분하게 한 행위는 차별, 차별행위 중지 권고

국가인권위 2018. 9. 27.자 16진정097590 결정

국가인권위, HIV 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자 HIV 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 HIV 감염인에 대한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1.자 18진정0160000결정

부록 2. 국내 주요 성소수자 인권 단체

단체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facebook.com/djsolongos/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iSHAP(아이샵) ishap.org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pride.or.kr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maporainbow.net

망할세상을 횡단하는 LGBTQI 완전변태 wanbyun.org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ACeTage) acetage.com

무지개인권연대 queer.or.kr

비온뒤무지개재단 rainbowfoundation.co.kr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blog.naver.com/gender_voyager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korea.org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twitter.com/northwest_db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pinks.or.kr

신나는센터 sinnaneun.org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cafe.naver.com/youthsexualright

언니네트워크 unninetwork.net

월급쟁이 퀴어 모임 twitter.com/Queer_workers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NGA/SF) glocalactivism.org

퀴어여성네트워크 facebook.com/queerwomen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transgender.or.kr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트랜스해방전선 facebook.com/freetransrigh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org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twitter.com/intersex_kr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knpplus.org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aidsmove.net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네트워크

군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 gunivan.net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facebook.com/IDAHOfinKorea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quvkorea.tistory.com

레인보우보트 rainbowvote.org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facebook.com/rainbowrefugeeskr/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org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facebook.com/lgbtqsos

문화/미디어

경남퀴어문화축제 twitter.com/gyeongnamqcf
대구퀴어문화축제 queer.or.kr/xe
레인보우스토어 rainbowstore.net
레인보우팩토리 cinerainbow.blog.me
레즈비언 공동체 라디오 방송 레주파 lezpa.net
부산퀴어문화축제 facebook.com/busanqueerfes/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org
서울프라이드영화제 spff.kr
생활착형비혼여성고르스 아는언니들 facebook.com/iknowusisters
인천퀴어문화축제 <https://twitter.com/icqcf>
전주퀴어문화축제 facebook.com/jeonjuqcf/
제주퀴어문화축제 jejuqcf.org/
친구사이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chingusai.net
퀴어문화축제 kqcf.org
퀴어영화제 kqff.co.kr
퀴어페미니스트 책방 골 facebook.com/ccol.femi/
햇빛서점 sunnybooks.kr

대학

가천대학교 성소수자모임 GQ twitter.com/gachonqueer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KQ twitter.com/cuk_qs
강원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담쟁이 twitter.com/knudamj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성소수자 모임 Kupid twitter.com/kupid2018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facebook.com/cuethelifelix
건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여기저기 twitter.com/everywhereKY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빅(Qvik) facebook.com/kguqvik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Kivans twitter.com/KNUKivans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AKHUARIUM twitter.com/akhuarium
경희대학교 퀴어 인권동아리 QAKE twitter.com/itsquake_qake
계명대학교 계네들 twitter.com/kyenedle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queerkorea.org
광주광역시 성소수자 모임 폴라리스 twitter.com/gj_polaris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ROOKIE twitter.com/Rookie0229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twitter.com/kmu_2km
남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UING twitter.com/NSU_QUING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똥웅 twitter.com/dkuqueer
단국대학교(천안) 성소수자 모임 DKUeers twitter.com/D_Kueers

대진대 & 차의과학대 연합 포천 성소수자모임 네버랜드 facebook.com/neverland.queer
덕성여자대학교 퀴어소모임 Be B twitter.com/dsunibeb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쿤 facebook.com/qud.dongguk
동덕여대 성소수자 모임 코튼캔디 twitter.com/DDW_CC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twitter.com/diminor_
부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용사길드 twitter.com/pknuqueer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OASIS twitter.com/bistlgbt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ueer In PNU(QIP) facebook.com/QueerInPusan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facebook.com/sgDancingQ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큰따옴표 facebook.com/66quoutemark99/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QIS) queerinsnu.com
서울대학교 트랜스젠더 동아리 Trans In SNU(TIS) facebook.com/transinsnu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twitter.com/kkimmeta
서울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 facebook.com/SwuQueer0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녹큐) blog.naver.com/knockontheq
성공회대학교 퀴어모임 RaiN facebook.com/queerinskhu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퀴어홀릭 facebook.com/qhsince1398
성신여대 퀴어모임 Qrystal twitter.com/qrystal_sswu
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라잇
세종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IRIS twitter.com/sj_queer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 Qhoot twitter.com/smuqueer
순천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팔레트 twitter.com/palette_paint
송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SSU LGBT facebook.com/SSULGBT
아주대학교 퀴어 모임 DIP facebook.com/AjouAndQueer
안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AYUQ twitter.com/ayuqueer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facebook.com/yonsei.cometogether
영남대학교 퀴어동아리 YuniQue facebook.com/Yuni9ue
용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폭스파이어 twitter.com/foxfire_lgbtq
울산 성소수자 모임 THISWAY twitter.com/thisway_us
울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성소수자 동아리 무지개반사 twitter.com/rainbow_eu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blog.naver.com/ewhabyunnal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ALAXY twitter.com/ewhagalaxy
인천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멘 twitter.com/icqiccu
인천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포커스 twitter.com/incheonunivq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AIQU(Association of INHA Queer) twitter.com/queerinhacity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twitter.com/opendoor_jb
제주대학교 귀여움 QUTE twitter.com/jnu_qut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피쉬 rainbowfish.kr
충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강충강충 facebook.com/rainbowincsu

추계예술대학교 퀴어동아리 Q&A twitter.com/queer_n_art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 twitter.com/cnu_rave

충북대학교 성소수자 별별행동 2:30 twitter.com/TwoThirty20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tech(큐텍) twitter.com/koreatech_queer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facebook.com/qsadia.hufs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twitter.com/hufsouterplanet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퀴어로스페이스 twitter.com/gaviatorkau

한남대학교 페미니스트 퀴어 인권모임 한큐(HanQ) twitter.com/hnygay

한성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한우(Hansung Rainbow) twitter.com/hansung_hanow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facebook.com/gobalpeople

한양대학교 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facebook.com/HYQRC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twitter.com/hongbansa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성소수자 동아리 EQUEL twitter.com/kaist_equel

POSTECH 성소수자 모임 링큐(LINQ) twitter.com/postechlinq

출판/아카이브

국제인권소식 통 tongcenter.org

바이섹슈얼 웹진 bimoim.tistory.com

이채 : 이야기채집단 blog.naver.com/chaezipdan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queerarchive.org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transroadmap.net

퀴어인문잡지 뼈라 notein-between.com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펄 facebook.com/ferm.unninetwork

해외 LGBT 소식 블로그 Mitr mitr.tistory.com

연구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blog.daum.net/lesbian2013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 rainbowconnection.kr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runtoruin.com/2059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lgbtstudies.or.kr

LGBT상담연구회 lgbt-kcpa@naver.com

SOGI법정책연구회 sogilaw.org

법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andlaw.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kpil.org

상담/쉼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ddingdong.kr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chingusai.net/xe/main_connect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facebook.com/npplgbt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21.org/go/rainbowrights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kgreens.org

종교

기독교 퀴어모임 물꼬기 facebook.com/equalchrist

무지개예수 facebook.com/rainbowyesu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facebook.com/salowee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후원자

List of Supporters for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8)>

강건하	김수산나	박장균	여미을	인서	하야시 나츠오
강유정	김아인	박장순	오선영	임유경	하영&선우&윤서
강지수	김영진	박정명	오은지	임찬희	한
강철	김은우	박지영	올튼	장우진	한상희
고수란	김인숙	박진하	원성민	장호경	한슬기
고영주	김준석	박채린	위정은	전용재	한유림
공세은	김진아	배용수	유경원	전혜리	해은
곽요한	김창은	배진희	유언정	정상혁	혜완
구형찬	김하연	변지은	유진솔	정숙조신	홍진백
권동훈	김혁	샌더	유체	정영은	황유철
권명아	김현	서소령	유화정	정유성	희색연필
권선의	김현미	성정숙	윤비원	정지상	효종
권솔	김호규	손보라	윤정연	정지혜	
권하연	김효민	송선아	이누리	정혜린	
금태섭	나수진	송승엽	이동주	조서연&김민조	
김가영	나영	송지수	이세린	조윤정	
김결희	남승호	쇼지히로카	이수연	조한범	
김나영	더지	신동훈	이영해	조혜원	
김다영	루인	신유정	이윤선	종원	
김다은	류민희	신유진	이은실	종이	
김동길	메기웨이	신정	이은정	주현경	
김래영	문기우	신준하	이정민	진진지	
김명환	미드	신형준	이종걸	최강섭	
김민규	박상영	신혜선	이준엽	최다정	
김보름	박서영	아만다	이진의	최보수	
김보명	박성빈	안와제	이채원	최서진	
김상국	박성진	알렉스올푸	이채은	최은순	
김상범	박승진&권명보	양현준	이춘배	타리	
김석호	박영서	양효영	이현수	텀레이니스미스	
김선숙	박유경	엄주호	이형섭	하건	

Alan Yepez-Mejia	Peter Nynäs
Jolene Perry	Rob Donaldson
Jonathan Dobinson	YLIO
ML	



발행일	2019년 5월 17일
발행	SOGI법정책연구회
편집	장서연
집필	김지림, 김현경, 류민희, 박한희, 송지은,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 한가람
영문판 편집	김지혜
영문번역	김유석
디자인	이경민

